

목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03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안내	12
1. 국토교통부	13
2. 산림청	16
3. 통일부	19
4. 문화재청	22
5. 농림축산식품부	25
6. 보건복지부	28
7. 여성가족부	31
8. 환경부	34
9. 문화체육관광부	37
10. 고용노동부	40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관련 상담 안내	42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4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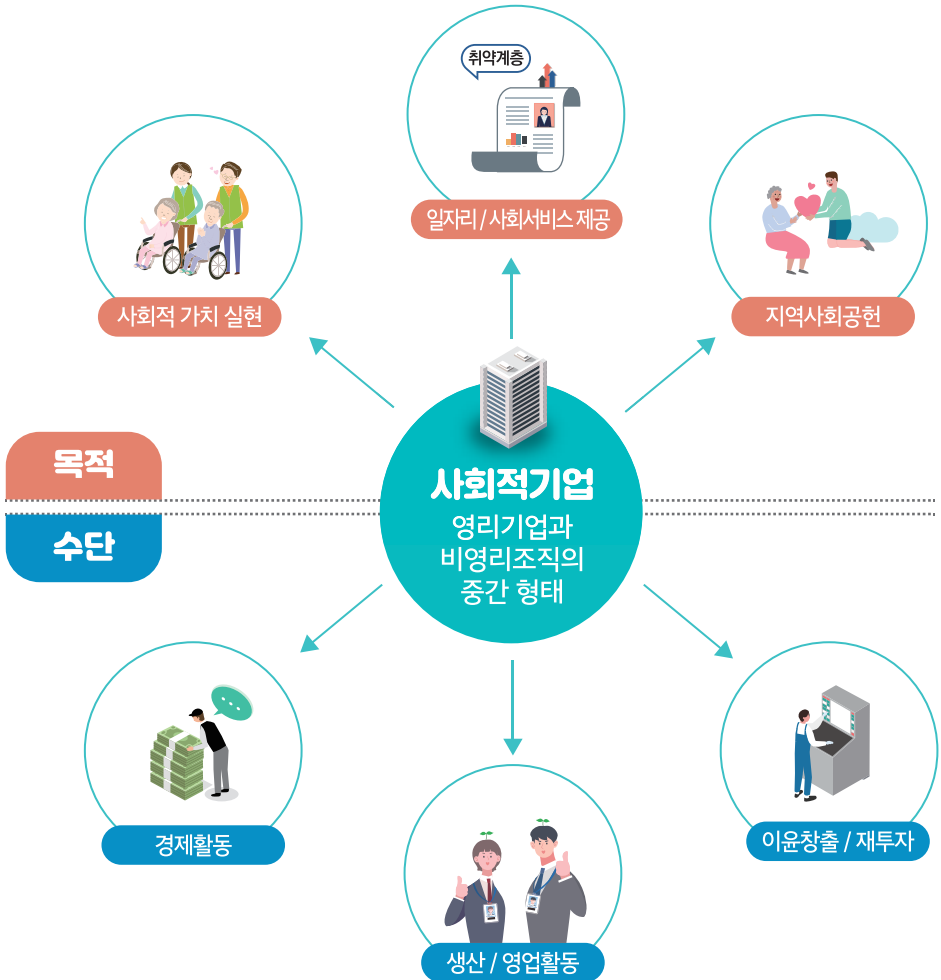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소관부처 사업분야와 관련 있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은 각 부처별 공고시기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의 기간에 맞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신청 및 심사일정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3, 7월 ○ 심사일정 : 연 2회 ○ 심사 : 5, 9월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6월 ○ 심사일정 : 연 1회 ○ 심사 : 9월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6~7월 ○ 심사일정 : 연 1회 ○ 심사 : 9월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3, 9월 ○ 심사일정 : 연 2회 ○ 심사 : 5, 12월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4월 ○ 심사일정 : 연 1회 ○ 심사 : 6월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3, 7, 10월 ○ 심사일정 : 연 3회 ○ 심사 : 5, 9, 11월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3, 8월 ○ 심사일정 : 연 2회 ○ 심사 : 4, 9월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9월 ○ 심사일정 : 연 1회 ○ 심사 : 11월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4, 9월 ○ 심사일정 : 연 2회 ○ 심사 : 6, 12월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9월 ○ 심사일정 : 연 1회 ○ 심사 : 11월

* 각 부처별 공고는 해당 부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가능

** 신청 및 심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01

공고 및 신청 접수
(각 부처)



02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03

지정심사 및 의결
(각 부처)



04

부처장 승인 및 지정서 교부 등
(각 부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 지정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정관 및 사업계획)
* 단 일자리제공형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고용
4. 정관 및 규약 구비(해당하는 경우)
5.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위의 주관별 연중 1~3차 일정 공고
(통합정보시스템)

최대2년
(각 부처별 지원사업은 별도)

← 주관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전월말 기준 1명)
3. 사회적 목적 실현(계량화된 실적)
* 신청 전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6. 정관 및 규약 구비
7.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내용 →

← 신청 →

상시접수
(우편접수 및 통합정보시스템)

← 지원기간 →

최대 3년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 영농(영어) 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	--	---

* 개인사업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불가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예비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정관에 규정 한 후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용함)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화된 실적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함
(단 일자리제공형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고용)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법인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단위: 개소, '22.12월)

부처명	활동기업 ('22.12)	신규지정 ('22)	분야
국토교통부	76	17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임대·관리업, 주거취약계층
산림청	93	26	임산물, 목공, 산림복지서비스 등 사람과 숲의 상생공존
통일부	6	3	의류 제조, 예술 공연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문화재청	16	4	문화유산 체험 등 문화재 활용,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농림축산식품부	61	7	농촌 체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농가소득과 농촌 복지증진
보건복지부	82	19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지원사업 및 보건산업 관련 기업 등
여성가족부	86	29	경력단절여성 고용,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다문화 가족 직업교육 등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사업
환경부	56	19	재활용, 기후서비스, 환경교육, 생태복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 복지
문화체육관광부	155	51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성화
고용노동부	473	141	참여 자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평가 결과: 성공
10개 부처	1,104	316	

부처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안내

-10개 부처별-



국토교통부



산림청



통일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01

국토교통부



공고 시기

9월

지정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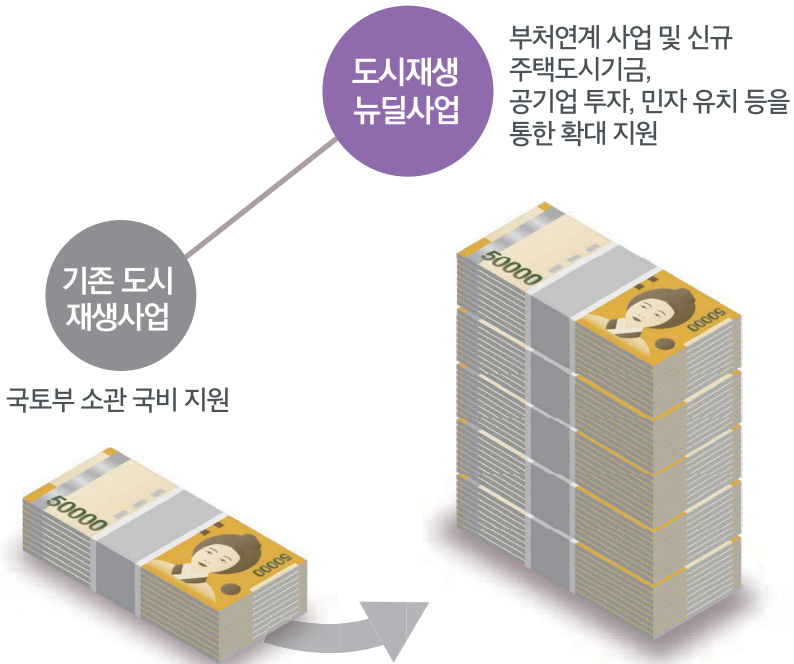
11월

📞 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044-201-4932
도심재생과

📞 협력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042-866-8328

부처 소관사업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 ✔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 ✔ 제시된 분야 외 기타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 신청 분야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예시

건축·주택 분야

- 집수리 등 소규모 목공업
- 주택 등 건축물 건설업
- 유희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업



경제분야

- 드론, 물류 등 스타트업
- 마을카페, 마을식당 등 외식업
- 공예품 등 소규모 제조·판매업



문화·예술·관광 분야

- 문화관광 등 체험업
(예시: 도시민박, 해설사 등)
- 축제 등 문화예술 기반사업
- 공연 및 제작관련 기획업



사회·복지 분야

- 지역연구 및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업
-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사업

◆ 부처 지원사항

- ☑ (도시재생예비사업 가점)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으로 연계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가점 부여
- ☑ (기금지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시설,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임대상가, 생활SOC 조성 등 사업자 용자

02

산림청



공고 시기

3월, 7월, 10월



지정 시기

5월, 9월, 11월



소관 부서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1851, 1855



협력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진흥임업교육실

02-6393-2633, 2634

부처 소관사업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사업

- 청년 소셜 챌린저 교육,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회적 마인드를 갖추고 특색있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사업

- 지역에 특화된 산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지역공동체 창업·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신청 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 전반

- 산림사업, 목재산업, 정원산업, 산림보호, 산촌마을사업,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림레포츠 등

* 기업의 주된 사업 및 사회적 목적이 산림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기업

부처 지원사항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자원 활용 컨설팅·교육·판로·마케팅·기업홍보(박람회 등) 지원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분야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기타 지원

-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독려

03

통일부



공고 시기

3월, 8월



지정 시기

4월, 9월



소관 부서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51



협력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 02-3215-5776

부처 소관사업



☑ 초기정착 생활안정지원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때까지 신변을 보호하고, 의료지원, 생활안내 등을 통해 남한사회 적응 지원



☑ 취업·창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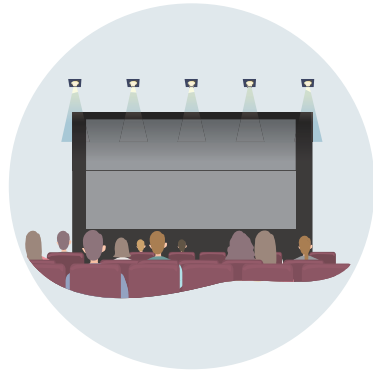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북한이탈주민 창업자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분야

- ✓ 기업의 주된 사회적목적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업을 영위



북한이탈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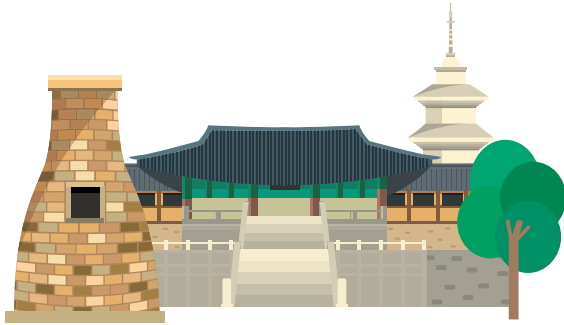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부처 지원사항

- ✓ 경영개선 지원(마케팅, 판로개척, 세무·회계, 인증컨설팅 등)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 사업 참가자격 부여(연내별도 공고)

04

문화재청



공고 시기

4월



지정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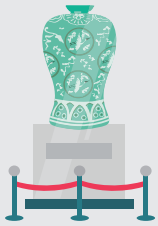
6월



소관 부서 |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 042-481-3149~50

부처 소관사업

- ☑ 문화유산 보존·관리
- ☑ 문화재 지정·등록
- ☑ 문화재 보전·전승 촉진
- ☑ 지역문화유산 교육 및 콘텐츠 보급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재 지정·등록



문화재 보전·전승 촉진



지역문화유산 교육 및 콘텐츠 보급

신청 분야

✔ 전통 문화재 활용 보존 사업

* 문화유산 체험 등 문화재 활용,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 문화유산 교육 및 콘텐츠 보급 사업

*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

*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지정

부처 지원사항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0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시기

3월, 7월



지정 시기

5월, 9월



소관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부처 소관사업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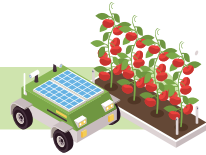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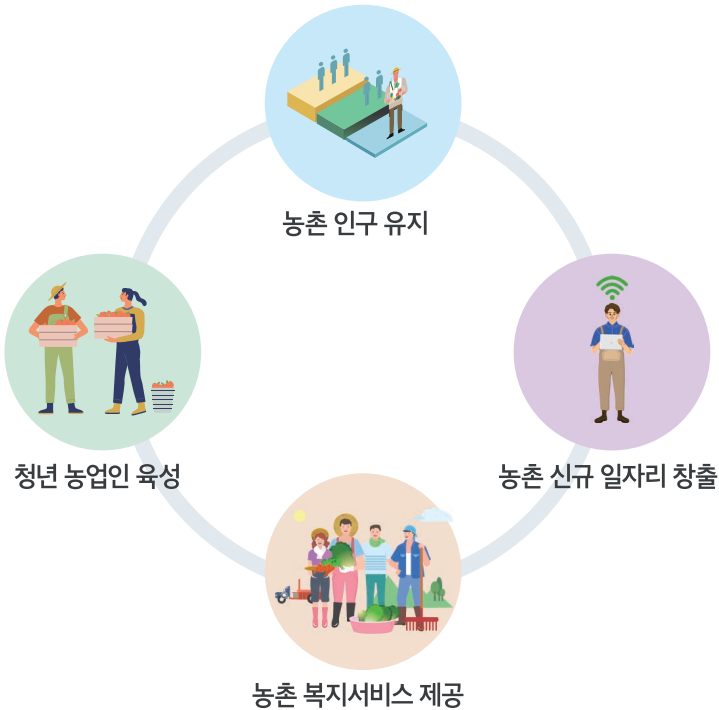


☑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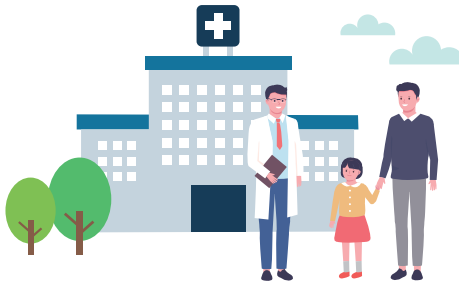
신청 분야

- ☑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 설립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기업
-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06

보건복지부



공고 시기

6월~7월



지정 시기

9월



소관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부처 소관사업

☑ 보건복지 분야 전반

신청 분야

☑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사업 제공기업(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고령자친화사업,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보건산업 운영 기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사업 제공기업



보건산업 운영 기업

부처 지원사항

-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한 컨설팅, 정부재정일자리 우선배정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부여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컨설팅 제공

 - * 시·도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 및 지원기관
- ☑ **(보건산업 분야*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등 전반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건 관련 수출·해외진출 등

지정 신청 관련 안내

☑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조직형태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기타(창의·혁신)형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07

여성가족부



공고 시기

3월, 9월



지정 시기

5월, 12월



소관 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6197

부처 소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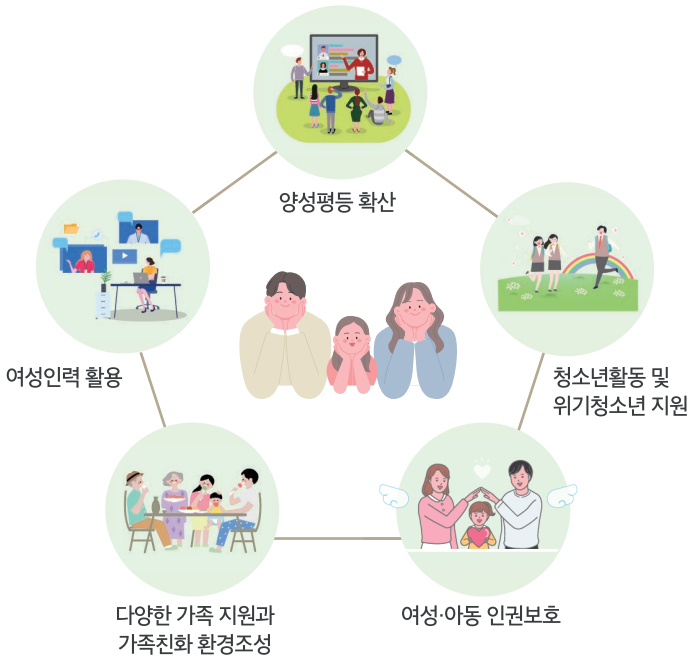
-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 ✓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 신청 분야

-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



☛ 부처 지원사항

-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운영
(특화 분야 컨설팅, 홍보 지원 등 경쟁력 강화사업, 우수기업 선정 등)

08

환경부



공고 시기

6월



지정 시기

9월



소관 부서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89

부처 소관사업

☑ 환경분야 전반

* 환경보건, 친환경 보존, 생활환경, 상·하수도, 토양지하수, 자원순환, 기후대기 배출권, 환경기술 관련 사업 등

신청 분야

☑ 환경관련 분야



재활용



기후서비스



환경교육



생태복원



친환경상품



기타 환경과 관련된 사업분야

부처 지원사항

-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경영컨설팅 및 교육, 통합워크숍 등)

지정 신청 관련 안내

-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0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시기

연중 1회(접수: 9월)



지정 시기

11월



소관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부처 소관사업

☑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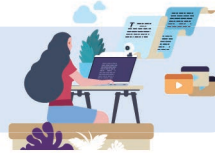
☑ 박물관, 미술관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복합화



☑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유희공간 문화 재생



☑ 예술 창작자의 권리보장 및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 국내 관광 활성화,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신청 분야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부처 지원사항

☑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문화예술)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체육)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 (관광) 관광벤처 창업 지원

10

고용노동부



공고 시기

4월, 9월



지정 시기

6월, 12월



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7

신청 자격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신청 분야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창의·혁신)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관련 상담 안내 ◀◀

신청접수: www.seis.or.kr

권역	기관명	주소
강원	(사)강원도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354-27, 우리빌딩 5층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7, 3층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 301호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5층
대전	가치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13, 금강베네치아 211호
부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층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 10층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전남	사회적협동조합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69, 3층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 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 4층
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

권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033-749-3950	033-749-3900	gwse0524@naver.com
경기	070-4763-0130 (내선번호 1번)	070-4763-0120	pns@pns.or.kr
경남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053-956-5002	053-267-5003	se@sebiz.or.kr
광주	062-383-1136 (내선번호 1번)	062-384-1137	ses@socialcenter.kr
대구	053-956-5001	053-217-5003	dg_secenter@cne.or.kr
대전	042-624-6005	044-863-8676	value@value-plus.kr
세종	044-864-8676		
부산	051-950-1231	051-790-1099	jiu1028@dcb.or.kr
서울	02-365-0330 (내선번호 2번)	02-365-0440	jfse@daum.net
울산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인천	032-446-9492 (내선번호 1번)	032-421-9585	inseca@daum.net
전남	061-337-2110	061-334-2110	jnsi23@naver.com
전북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gmail.com
제주	064-726-4843 (내선번호 1번)	064-755-4843	jejusen_secoop@jejuhub.org
충남	041-415-2012 (내선번호 1번)	041-415-2013	cnse1212@gmail.com
충북	043-222-9001 (내선번호 1번)	043-223-9201	cbse@hanmail.net

»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채용하는 전문인력(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의 인건비 지원 - '23년 1인당 월 250만원 한도 - 최대 3명(예비 1명) · 고령자 전문인력 1명 추가지원, 5년간 지원 - 지원 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예비: 1년차 10%, 2년차 20% * 인증: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
	(예비)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채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 '23년 1인당 월 2,010,580원 기준 일정 비율 지급 - 최대 50인 한도, 5년간 지원(예비 2년, 인증 3년) * 예비 50%, 인증 40% * 취약계층 고용 시 20%p(예비), 30%(인증) 추가지원 	○	○
	사업 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연간 1억원 한도(예비 및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5년간 지원(예비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 지원회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
	사회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23년 1인당 206,050원 한도, 50인 내, 4년간 지원 	-	○
경영 지원	경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및 자부담 * 기초경영지원: 지원한도 및 자부담 없음 * 전문컨설팅: 총 5회(예비 연 1천만원 이내) 신청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자부담 	○	○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p>☑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p> <p>*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5개소('22년)</p>	—	○
	판로 지원	<p>☑ 창업팀을 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협력매장 96개소 운영 지원 - 온라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 TV 홈쇼핑: 상품 발굴 및 방송지원 - 유통확대 지원: 다양한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 입점역량 강화: 상품진단, 상품개선, 유통채널 입점 연계 	○	○
세제지원 제공		<p>☑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p> <p>☑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p> <p>☑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p> <p>☑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p>	—	○
금융 지원	모태 펀드	<p>☑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8개 조합, 468억원 규모)</p> <p>- '23년도 제9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p>	○	○

202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안내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전화 044-202-7427

디자인 열림기획(주) 044-868-5055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